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2 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영교·한정애

박 정ㆍ이성윤ㆍ이기헌

한민수 · 임미애 · 김용민

강유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단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최근 K-콘텐츠를 통해 한류가 확산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·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, 국외 한국어·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도 2007년 몽골 울란바토 르에 처음 개설된 이래 1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 2 48개소가 되어 약 19배 증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어·한국문화 전파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.

하지만 세종학당이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국내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황임.

이에 한국어 ·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

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국가는 재단의 예산 및 인력 확대와 콘텐츠·홍보 확대를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9조의2(세종학당재단 설립 등) | 제19조의2(세종학당재단 설립 등) | | |
| ① ~ ⑦ (생 략) | ① ~ ⑦ 현행과 같음) | | |
| <u> <신 설></u> | ⑧ 국가는 재단의 예산 및 인 | | |
| | 력 확대와 콘텐츠·홍보 확대 | | |
| | 를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| | |
| |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 | | |
| <u>⑧</u> ~ <u>⑩</u> (생 략) | <u>⑨</u> ~ <u>⑪</u> (현행 제8항부터 제1 | | |
| | 0항까지와 같음) | | |